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9
----------	-----

제출년월일 : '98. 5. .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현행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 조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6조의 “서기는 문화계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업무담당계장인 “문화계장이 된다”로 (당연직)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문화계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문화계장이 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2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간사와서기) 2항중 “서기는 문화계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를 “ 서기는 문화계장이 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간사와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되며, 서기는 <u>문화계장을 위원장이 임명</u> <u>한다.</u>	제6조 (간사와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되며, 서기는 <u>문화계장이 된다.</u>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 (1996. 3. 1) 조례 제23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파주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지편찬 및 발간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상임위원 및 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 4 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무)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등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6 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문화계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7 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8 조(실비변상) 시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